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진철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김진철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8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본 개정안은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·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비 등을 지원받던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재정적 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자연보호활동의 위축이 우려됨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-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